

두우레저개발 공고 제2022-00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보상 계획 열람 공고 (2차)

두우레저개발(주)에서 추진중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6. 17.

두우레저개발(주) 대표이사 김 은 민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궁항리 일원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두우레저개발(주) 경남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 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일체
-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또는 개별통지문 발송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2. 06. 17. ~ 2022. 07. 01.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산단개발과☎ 055-880-2633
 - 하동군 금성면 고포마을길 122 2층 보상사무소☎ 010-8965-7764
- 다.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라. 이의신청 방법

- 하동군청 산단개발과 또는 보상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시기

가. 열람기간만료 → 감정평가업자선정(주민추천등) →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다.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 및 공탁

6. 기타사항

가. 상기의 보상계획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편입토지 및 물건의 내역에 대하여는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송달에 갈음합니다.

다.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